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-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19. 6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-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19 - 26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19년 6월 3일

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. 7. 1자로 시행(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)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개정 나. 개정내용

연번	현 행	개 정 안	비고
1	장애등급	장애 정도	
2	장애 '1 ~ 3급'	'심한 장애'	
3	장애 '4 ~ 6급'	'심하지 않은 장애'	
4	장애 '1 ~ 6급'	'등록장애인'	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장애인복지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부칙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(예산 관련 사항 없음)

다. 협의사항

- 1) 기획예산과(비용추계, 법제심사, 규제심사)
- 2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
- 3) 가족정책과(성별영향분석평가)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(2019. 4. 24. ~ 2019. 5. 14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신·구 조문대비표, 관련 법령: 별첨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1)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강서구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도는 유지함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으로 2단계로 단순화함

¹⁾ 장애등급제: 장애인 등록신청시 의학적 심사를 통해 장애유형(15개) 및 장애등급(1~6등급) 결정

^{※ 1988}년 도입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활용되어 옴

[※] 개편내용(2019년 7월 1일 시행)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개정 조례 목록

연번	조 례 명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	행정지원과
2	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	교육청소년과
3	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	홍보정책과
4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	장애인복지과
5	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경에한국시작
6	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	가족정책과
7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	주차관리과

- ※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개별 개정 추진(문화체육과 소관)
 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중 "장애등급"을 "장애 정도"로 한다.
 -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

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"1~3급"을 "심한"으로 하고, 제2항제1호 중 "4~6급"을 "심하지 않은"으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4조제2항제1호 중 "1~3급"을 "심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"4~6급"을 "심하지 않은"으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제7조제1항 단서 중 "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는"을 "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"으로 한다.

[별표]의 순위1의 장애인란 중 "장애등급이 1~2급"을 "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"으로 하고, 순위2의 장애인란 중 "장애등급이 3~6급"을 "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"으로 하며, 순위3의 장애인란 중 "장애등급이 1~6급"을 "등록장애인"으로 한다. [별지]서식 중 "장애등급"을 "장애 정도"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[별지] 제1호 서식 중 "장애유형 및 등급"을 "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"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

제23조의2제2호다목 중 "1·2·3급"을 "심한"으로 하고, 같은 호라목 중 "4·5·6급"을 "심하지 않은"으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별표1 <비고>란 제9호가목 중 "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" 를 "등록장애인으로서"로 한다.

다. 종합의견

-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 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 용해 왔으나, 현실적인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비 판을 받아 왔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,
-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하고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여 이를 참고로만 하고,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제공될 예정임
 - 총 7개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되는 것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·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함.

붙임 관계 법령 1부.

붙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□ **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** (2019. 7. 1. 시행)

① 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② 삭제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<u>장애 정도</u> 사정(査定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,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

받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, 등록증의 발급,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, 장애판 정위원회,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(장애의 종류 및 기준) (2019. 7. 1. 시행)

- ①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별표 1 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